

# 교외연구비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

2023.2.16. 산학지원팀

## 1. 혁신법 기준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.

- 1) 참여연구원, 학생연구원 → 참여연구자, 학생연구자
- 2) 연구지원인력 → 연구근접지원인력
- 3) 비목 → 사용용도

## 2.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.

- 1) 제4조 4항: 직접 구매시 연구책임자가 검사와 검수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.
- 2) 제4조 7항: 연구시설·장비와 달리 연구실운영비(이전 사무용품, 연구환경유지비)로 자산 구매시 납품 및 검수기간을 별도 적용합니다.
  - 연구시설·장비의 경우 과제 종료일 2개월전에 납품 및 검수 완료되어야 하나 연구실운영비의 자산은 과제 종료일까지 완료
- 3) 제4조 8항: 단계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 종료일을 단계과제의 최종 종료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.

## 3. 교외연구비 사용용도를 현행화 하였습니다.

비목(변경전)	사용용도(변경후)	주요 변경 사항
시설·장비 개발경비	<삭제>	▷ 미사용 사용용도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삭제하였습니다.
부지·시설 매입비	연구인프라 조성비	▷ 사용용도 용어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현행화하였습니다.
<신설>	지식재산창출활동비	▷ 기술정보활동비로 사용되었던 지식재산창출 활동비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분리하였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</li><li>- 기존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이동</li></ul>

비목(변경전)	사용용도(변경후)	주요 변경 사항
기술정보활동비	외부전문기술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혁신법 기준에 맞추어 현행 사용용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.</li> <li>- 교육훈련, 학회·세미나 참가비 연구인력지원비로 이동</li> <li>-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로 이동</li> <li>-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일용직 활용비 그 밖의 비용으로 이동</li> </ul>
회의비	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회의식대를 인당 50,0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.</li> <li>- 단, 외부 참여연구자 중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적용 대상자 제외</li> </ul>
국내외 출장여비	출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사용용도 용어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하였습니다.</li> </ul>
사무용 기기 및 SW비	소프트웨어 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사용용도 용어 및 용도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하였습니다.</li> <li>-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품목으로 한정 하며, 사무용품은 연구실운영비 사용</li> </ul>
<신설>	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혁신법 기준에 맞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를 별도 구분하였습니다.</li> </ul>
사무용품, 연구환경유지비	연구실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혁신법 기준에 맞춰 사무용 기기 및 SW를 포함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통합합니다.</li> <li>- 단, 단순 난방용 전열기구와 시설팀 협조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 개조 품목(에어컨 등)은 불인정</li> </ul>
식대	연구인력지원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혁신법 기준에 맞춰 참여연구인력에게 지원되는 비용으로 통합합니다.</li> <li>- 기존 야근(특근) 식대 외 교육훈련비, 학회·세미나 참가 비용 통합</li> </ul>
종합사업관리추진비	종합사업관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사용용도 용어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하였습니다.</li> </ul>
수용비 및 수수료	그 밖의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사용용도 용어 및 용도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하였습니다.</li> <li>- 문헌구입비, 논문게재료, 인쇄, 각종 수수료, 우편요금, 일용직 활용비 등의 실소요 경비</li> <li>- 논문게재비용 사용시 사사표기기준 삭제. 단, 과제별 논문 실적 인정 기준은 사업·과제별 기준에 따름</li> </ul>
연구재료비	연구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사용용도 용어 및 용도를 혁신법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하였습니다.</li> <li>-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운영비 추가</li> <li>- 단, 연구와 무관한 홈페이지, 기관 전체 전산처리 비용은 불인정</li> </ul>
<신설>	보안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혁신법 기준에 맞춰 사용용도를 추가 하였습니다.</li> <li>-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 한하여 인건비의 3% 이내 계상</li> </ul>
<신설>	국제공동연구개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혁신법 기준에 맞춰 사용용도를 추가 하였습니다.</li> <li>- 해외 소재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 연구 수행시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</li> <li>- 단, 협약 체결시 승인된 경우에 한함</li> </ul>